

[별지 제4호서식]

2018년 12월 26일 제5회
이 사 회 회 의 록

창 원 경 륜 공 단

2018년 12월 26일 제5회
이사회일시·출석·심의내용

○일 시: 2018년 12월 26일(수요일)

자: 11시 00분

지: 12시 00분

○장 소: 창원경륜공단 회의실

○총이사수: 8인

○감 사: 1인

○출석이사수: 8인(위임참석 2명)

○감 사: 0인

○의 장: 최정경 이사

의장의 2018년도 제5회 이사회 개최선언에 이어 이사장(관계직원)이 제안설명으로 심의하여 아래(별첨)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한다.

2018년 12월 26일 12시









창원경륜공단

2018년 12월 26일 제5회 이사회 이사·감사 서명록

2018년 12월 26일

창원경륜공단

위 심의·토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·감사 서명 날인함

이 사 · 감 사	서 명 날 인
이 사 장 김철곤	
상임이사 직무대행 박영명	
이 사 최정경	
이 사 김규열	
이 사 서윤성	
이 사 손태성	
이 사 김제홍	
이 사 서정두	
감 사 김해성	비 참

의안목록표

의안번호	2018-5-1	제안부서	기획홍보팀
건명: 의장 선임의 건 의결내용: 신임 의장 최정경 이사 ○ 공단정관 제25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 공식인 의장 선임 완료			

의안번호	2018-5-2	제안부서	기획홍보팀		
건명: 2019년 당초 예산안 의결내용: 원안가결 ○ 2019년 예상수입액 (단위: 백만원)					
구분	2019년 사업예상			비고	
	합계	경주	비경주		
매출액	397,000	211,899	185,10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륜: 3,682억, 경정: 288억 • 경주(승자투표), 비경주(교차투표, 경정) 	
수입액	합계	41,424	16,727	24,69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륜수입 및 예산차액: 28.4억원 → 창원시 세입·세출예산 편성
	발매수득금	30,609	16,727	13,88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경륜: 284.4억, 경정: 21.6억
	기타부대수입	2,235	0	2,23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점, 식당, 임대료, 입장료, 이자수입 등
	창원시지원	8,580	0	8,5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적립금: 사업준비금(22.4억) • 공영자전거운영비: 63.4억

○ 예산총괄 (단위: 백만원)

구분		'19년 당초	'18년 당초	증·감	증·감율
합계		38,580	37,410	1,170	3.1%
특별회계	경륜운영대행사업비	30,000	30,000	0	0%
	기타경륜대행사업비	2,240	1,870	370	19.8%
일반회계	공영자전거운영비	6,340	5,540	800	14.4%

의안번호	2018-5-3		제안부서	기획홍보팀	
<p>건명: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</p> <p>의결내용: 원안가결</p> <p>○ 2018년도 사업추진 결산</p> <p>- 각종 사업추진 절감예산 및 집행 잔액 정리로 과다 불용액 지양</p> <p>○ 소요액 (단위: 백만원)</p>					
구분		증액편성	감액편성	증·감	재원조달방법
총액		703,402	△703,402	0	
특별회계 대행사업비	경륜운영	565,602	△565,602	0	·기정예산조정(증·감)
일반회계 대행사업비	공영자전거	137,800	△137,800	0	·기정예산조정(증·감)

의안번호	2018-5-4		제안부서	총무회계팀
<p>건명: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일부개정규정안</p> <p>의결내용: 원안가결</p> <p>○ 제12조(구성) 일부개정: 제2항</p> <p>○ 제17조의2(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)신설</p> <p>○ 제17조의3(결원시 채용)신설</p> <p>○ 제18조(채용절차) 일부개정: 제2항</p> <p>○ 제24조(결격사유 및 경력조회) 일부개정: 제1항</p> <p>○ 제25조(근로계약의 체결) 일부개정: 제4항</p> <p>○ 제33조(표창) 일부개정: 제3호 2년 이상→ 3년 이상</p> <p>○ 제68조(병가) 일부개정: 제3항 종합병원→ 병원</p>				